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6월 2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21.(목) 오후 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6. 21. (목)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
담당과장	정병락 과장(044-203-5880)	담 당 자	김종윤 사무관(044-203-5882) 김진석 사무관(044-203-5884)

무역위원회, '雪原' 백주(중국술)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월 21일(목) 제378차 회의, '雪原' 백주(중국술) 상표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내리고, '몬카트(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 현재 교육방송(EBS) 등 텔레비전에서 방영중인 '몬카트' 만화영화(애니메이션)

□ 무역위원회는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 상표권 침해 조사는 '㈜가인국제무역'의 신청으로 진행했고,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18.1.9.) 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사건설명회 등의 조사절차를 수행했다.

○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역위원회는 A사의 중국산 백주 수입·판매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제재조치로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삼지애니메이션'이 국내사업자 B를 상대로 '18.5.16.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몬카트(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다.

○ ㈜삼지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몬카트’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하여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몬카트(MONKART)’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 피신청인 B는 신청인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몬카트(MONKART)’ 상표권을 침해한 장난감 카트 등 완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해 무역위원회는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통관보류 제도를 연계시켜 지재권 침해로 인한 산업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17년 3월부터 지재권자가 세관장에게 지재권 침해 혐의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세관의 통관보류가 지속되도록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 이번 백주 상표권 침해 조사는 무역위원회 조사신청과 연계되어 통관보류가 적용된 첫 사례이고, ’몬카트(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도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어 해당 조사대상물품이 세관에 통관보류 중이다.

* 통관보류 연계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 (’17년) 1건 → (’18.6월) 3건

○ 무역위원회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판정기간(6개월)과 비용부담이 없어서 지재권 침해를 당한 피해기업에게 유리하므로, 통관보류와 연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1.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개요
2.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개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김종윤 사무관(☎044-203-5882) 또는 김종윤 사무관(☎044-203-58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雪原' 백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조사 개요

○ **(신청인)** ㈜가인국제무역

○ **(피신청인)** 국내업체 A사(수입업체)

○ **(조사대상물품)** 백주 (HS코드: 2208.90.9000)

신청인 상표권		조사대상물품 및 사용상표	
상표 제1119092호	상표 제1243801호		
			

□ 조사 경과

○ 조사신청서 접수('17.11.29.), 조사개시결정('18.1.9.)

○ 서면조사('18.2월~6월), 현지조사('18.5월), 사건설명회('18.5월)

□ 조사 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백주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바,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제1항 제1호)

- 이는 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대상임

참고 2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조사 개요

○ **(신청인)** ㈜삼지애니메이션

○ **(피신청인)** 국내사업자 B(수입업체)

○ **(신청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완구)을 중국에서 수입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

○ **(조사신청일)** '18.5.16.

○ **(조사개시결정일)** '18.6.7.

○ **(조사대상물품)** 완구(HS코드: 9503)

신청인 저작권 및 상표권	조사대상물품
저작권 제C-2018-000498호 (몬카트 애니메이션)	
상표 제1190713호 (지정상품: 완구, 장난감 등) 	

□ 향후 계획

○ **(조사·판정)**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 조사절차를 거쳐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 판정, 침해 판정시 수입 중지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예정